

의안번호	2216842
의 퇴 인	김성원의원
회 답 일	2026.8.21.
추계번호	26D0899

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

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국방연구개발의 범위에 「방위사업법」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포함	의무규정
2	안 제8조 (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)	「방위사업법」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,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2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8조 (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)	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 「방위사업법」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,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 - 「방위사업법」 제17조의2제1항은 방위사업청장,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수 있다고 규정
 - 「방위사업법」 제17조의2제1항의 시범사업 중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시범

사업은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조제5호라목에 근거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,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일반물자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적용원가가 다름

- 국방연구개발사업은 방위사업계약 또는 협약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, 현재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「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」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하여 협약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
- 협약의 경우 방위산업체에게는 방산원가를 적용하고 비방위산업체에게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따른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을 적용함
- 반면, 방위사업계약은 방산원가를 적용하고, 일반물자계약은 일반원가를 적용함
- 반면, 군 주도 시범사업은 「방위사업법」 제17조의2에 의거 일반물자계약에 해당되어 일반원가를 적용함

[표 1] 방위사업청의 시범사업과 군 주도 시범사업의 추진방법 비교

구분		시범사업		
주체		방위사업청 시범사업		군 주도 시범사업
수행근거		「방위사업법」 제17조의2의 시범사업 중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「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」 제2조제5호 라목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		「방위사업법」 제17조의2
추진 방식		방위사업계약	협약	
		방위사업계약: 방산원가 적용	방위산업체	비방위산업체
			방산원가 적용	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따른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적용
절차	공모	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		
	사업선정	방위사업청		
	업체선정	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		
	예산집행	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		
	사업관리	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		
	시험평가	각 군		

자료: 방위사업청

- 방산원가는 「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에 관한 규칙」 과 「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에 관한 시행세칙」 에 의해 결정되는데, 방위사업청에 따르면, 일반원가에 비해 업체의 이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「방위사업법」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포함하도록 할 경우, 군 주도 시범사업은 방위사업계약이 가능해져 방산원가를 적용할 수 있고, 방위사업청 시범사업도 계약을 원칙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산원가 적용 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음
- 다만, 방산원가와 일반원가 간의 차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시범사업의 규모와 개별사업의 특성, 추진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,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

Ⅲ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